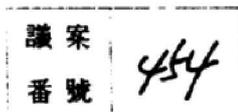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提出年月日 : 1994. 8. .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며,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함(案 제3조)
- 나. 보상금은 사망의 경우 일비 2년분 상당금액, 장애의 경우 일비 1년분 상당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중복시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함.(案 제4조)
- 다.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등급에 해당될 경우이며, 상해라 함은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함.(案 제5조)

라. 보상금은 사망시는 유족, 장애 및 상해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함.(案 제6조)

마. 보상금은 보상심의회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案 제7조)

바.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아래 4인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案 제9조)

(1) 의회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사.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案 제13조)

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案 제15조)

3. 參考事項(關聯法規) : 別添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15조의 2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자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에 대전직할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분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이 변동되어 위촉 또는 임명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의 간사)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접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청 구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명 장 소				상명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직할시 의회의장 직인					
대전직할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대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결 정>			
	<결정이유 >			
심 의 결 과	<심의위원 서명>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장				인
대전직할시장 귀하				

< 관련법규 발췌 >

지 방 자 치 법

제32조의2(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일 비 지 급 범 위
시·도의회의원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50,000원 이내

제15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의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②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폐질상태의 정도구분)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2급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91.4.2>

폐질등급(제45조관련)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이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쇠골·용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 고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상재해인정기준('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 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②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③ 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 ④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⑤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중대한 과실의 적용

- ①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또는 안전수칙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실 8개항등)
- ② 공무수행중이라도 음주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기타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①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 ②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출퇴근시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을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 상호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③ 의학적으로 당해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